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제5조 관련)

구 분	기본 실탄저장량	국제 사격대회 개최 등의 사유로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실탄저장량
1.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 개최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150만발 이하	700만발 이하
2. 사격선수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100만발 이하	300만발 이하
3. 그 밖의 종합사격장 및 라이플·권총·클레이 시격장	6만발 이하	30만발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종합사격장"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을 말한다.